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근거법률: 「고등교육법」제11조의5(신설)(법률 제21654호 '26. 5. 19. 공포, 2026. 11. 20. 시행예정)

3. 주요내용

가. 제4조의11을 제4조의14로 변경

- 1) 시행령 제4조의 11, 12, 13을 신규 개정으로 제4조의14로 변경

나. 제4조의11(학생 주거실태의 조사내용 등) 신설

- 1)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연례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조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사시기, 대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제4조의12(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신설

- 1)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시기·대상·절차·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사 절차·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제4조의13(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신설

- 1)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 지정과 업무 취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8. 20. ~ 09.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11을 제4조의14로 하고, 제4조의11부터 제4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1(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조사내용 등)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학생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성명·성별·주소·학교명·학년, 통학거리 등 그 밖에 학생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조사 대상자의 가족 구성에 관한 사항
3. 조사 대상자의 소득에 관한 사항
4. 조사대상자의 주거시설 형태(아파트, 원룸, 고시원 등)와 점유형태(자가, 임차, 하숙 등), 임차료 등에 관한 사항
5. 조사대상자의 주거환경 민족도 및 선호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의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및 재학 중인 학생과 그 학부모, 그 밖에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으로 한다.

제4조의12(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주거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주거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13(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11(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조사내용 등) ① 법 제11조의5 제1항에 따른 학생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조사 대상자의 성명·성별·주소·학교명·학년, 통학거리 등 그 밖에 학생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u> <u>2. 조사 대상자의 가족 구성에 관한 사항</u> <u>3. 조사 대상자의 소득에 관한 사항</u> <u>4. 조사대상자의 주거시설 형태(아파트, 원룸, 고시원 등)와 점유형태(자가, 임차, 하숙 등), 임차료 등에 관한 사항</u> <u>5. 조사대상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에 관한 사항</u> <u>6. 그 밖에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주거실태조사의 법 제11조의</u>

<신 설>

5제4항에 따른 조사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및 재학 중인 학생과 그 학부모, 그 밖에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으로 한다.

제4조의12(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주거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주거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주거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신 설></u> <u>제2장 교직원</u> <u><신 설></u> <u>제4조의11 (생 략)</u>	⑤ <u>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u> 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u> <u>제4조의13(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u> 1.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u>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u><삭 제></u> <u>제2장 교직원</u> <u>제4조의14 (현행 제4조의11과 같음)</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대학시설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7181